

충청북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□ 제안이유

- 적용시한 만료(1991. 12. 31)
- 목적 : 에너지절약을 위한 태양열 이용시설의 보급촉진

□ 주요골자

-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태양열 난방주택의 건축시 취득세, 등록세 면제

□ 근거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○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.

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의사일정 11항부터 17항까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전문위원 민귀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(참 조)